

『2019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』

심 사 보 고 서

1. 심사경과

가. 제출일자 : 2018년 11월 19일

나. 제 출 자 : 구 미 시 장

다. 회부일자 : 2018년 11월 20일

라. 상정일자 : 2018년 11월 28일

제227회 구미시의회 제2차 정례회 기획행정위원회

상정, 질의, 토론, 의결

2. 제안 설명의 요지

가. 제안 설명자 : 안전행정국장 배 정 미

나. 제안이유

○ 옥성면 테니스장 이전

화장시설 유치지역 지원사업 일환으로 추진되는 옥성면 다목적 강당 건립공사 부지 내 옥성면 테니스장이 편입되어 테니스장을 이전하여 기존 이용자 불만해소 및 주민여가 공간을 제공코자 함.

○ 사랑의 쉼터(구,동산초등학교) 폐교 매입

구미교육지원청으로부터 대부받아 사용 중인 사랑의 쉼터(구, 동산초등학교) 폐교 부지 및 건물을 매입하여 시설운영의 지속성 확보 및 향후 신축(후원)을 기부채납을 받고자 함.

○ 문성배수지 신설

당초 2018년 5월 원호배수지를 증설코자 국방부와 공유재산 교환을 의결 받은 것이었으나, 토지 교환에 많은 시간이 소요 되어 부지 매입 및 배수지를 신설하는 계획으로 변경하여 고 아읍 일대에 안정적인 용수를 공급코자 함.

다. 주요내용

【취득재산】

□ 옥성면 테니스장 이전

- 위 치 : 구미시 옥성면 대원리 162, 163-4, 164-5번지
- 대 상 : 토지 2,498㎡, 테니스장 1식
- 사업기간 : 2019년
- 기준가격 : 304백만원(시비 100%)
 - 토 지 : 34백만원(공시지가)
 - 테니스장 : 270백만원(시설비)
- 사업내용 : 테니스장 1면, 흰스(H=4m, L=100m), 조명시설, 화장실 등

□ 사랑의 쉼터(구,동산초등학교) 폐교 매입

- 위 치 : 구미시 도개면 동산리 884, 884-1, 953-3, 964번지
- 대 상 : 토지 9,193㎡, 건물 지상1층, 7동 / 연면적 987.14㎡
- 사업기간 : 2019년
- 기준가격 : 430.2백만원(시비 100%)
 - 토 지 : 236.2백만원(공시지가)
 - 건 물 : 194백만원(시가표준액)
- 사업내용 : 사랑의 쉼터(구,동산초등학교) 대지 및 건물 매입

□ 문성배수지 신설

○ 위 치 : 구미시 고아읍 송림리 산51-13, 산55-7, 문성리 산1-4, 133-17번지

○ 대 상 : 토지 11,690㎡

배수지 V=10,000톤/일, 도로 L=205m B=6m

○ 사업기간 : 2018년 ~ 2020년

○ 기준가격 : 8,475백만원(시비 100%)

• 토 지 : 75백만원(공시지가)

• 배 수 지 : 8,400백만원(시설비)

라. 참고사항

○ 근거법령

• 「지방자치법」 제39조, 같은 법 시행령 제36조

• 「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」 제10조, 같은 법 시행령 제7조

3. 검토보고의 요지 - 전문위원 구 춘 서

○ 본 『2019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』은

- 「지방자치법」 제39조 제1항 제6호, 「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」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중요재산의 취득·처분 시 “지방의회 의결”을 받아야하는 사항으로,
- 먼저, 「옥성면 테니스장 이전」 건으로 화장시설 유치지역 지원 사업으로 추진되는 옥성면 다목적강당 건립공사로 인해 부지 내 기존 테니스장이 철거됨에 따라, 대체부지로 테니스장을 이전·설치하고자 하는 것으로 기존 테니스장 이용자의 시설이용을 보장하고 농촌지역 스포츠인프라 확충을 위해 사업추진이 필요한 것으로 사료됨.

- 다음은, 「사랑의 쉼터(구,동산초등학교) 폐교 매입」 건으로 장애인 단기거주시설인 사랑의 쉼터는 현재 구미교육지원청으로부터 대부를 받아 운영 중에 있으나, 보다 효율적인 시설 운영과 관리를 위하여 부지와 건물을 매입하고, 추후 2019년 민간단체로부터 기부채납 받기로 한 「중증장애인 생활관 건립 사업」의 원만한 추진을 위한 것으로써 복지시설의 안정적 운영과 장애인들의 생활환경개선을 위해 사업추진이 타당한 것으로 사료됨.
- 끝으로, 「문성배수지 신설」 건은 해당 시설에 대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이 2018. 3월에 구미시의회에서 기 승인되었으나, 토지교환으로는 사업진행이 어려워 토지를 매입한 후 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것으로, 원호배수지 용량부족에 따라 고아읍 일대에 안정적인 용수 공급을 위해 시설증설이 시급한 상황이므로 사업추진이 타당한 것으로 사료됨.

4. 질의 및 답변요지 : 생 략

5. 토 론 요 지 : 생 략

6. 소수의견의 요지 : 없 음

7. 심 사 결 과 : 원안가결